교육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0.(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11. 10.(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6. 11. 10.(화) 국무회의 종료 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26. 11. 20., 12. 3.)에 따른 후속 조치
-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규정
-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규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및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26. 11. 20., 12.3.)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 후보자(위원 포함)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조회 당사자의 동의서 제출 의무,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마련

기존에는 운영위 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여,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재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유아교육법」을 개정(6.2.공포, 12.3.시행)하여,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운영위 위원 후보자(위원 포함)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와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 위원 후보자(위원 포함)의 범죄경력 등 관계 기관(경찰관서 등)에 조회 요청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였다. 또한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 위원 후보(위원 포함)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경우, 조회 당사자의 동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결격사유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범위와 방법

유아의 건전한 발달 등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5.19.공포, 11.20.시행)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다.

유아 사교육비의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목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현재 본조사가 최초로 실시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추진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하여,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라고 하였고,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영유아지원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책임자	과장	김민선 (044-203-7165)
		담당자	사무관	이혜윤 (044-203-7162)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책임자	서기관	최원석 (044-203-7030)
		담당자	사무관	조진행 (044-203-7031)

붙임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8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유아 사교육 비용, 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모,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조사의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18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8. ~ 8. 18., 7. 31. ~ 9.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2조의8을 삭제하고,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제22조의6부터 제22조의8까지로 하며,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같은 조 제6호의4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2.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6호의4라목·마목,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

② 원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

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제22조의7(종전의 제22조의6) 중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를 “법 제19조의5제1항제10호”로 한다.

제22조의8(종전의 제22조의7)의 제목 “(회의 소집)”을 “(회의 소집 및 의견 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22조의10제1항 중 “존중하여야”를 “존중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9조의4제1항”을 “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12 중 “법 제19조의4제1항”을 “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14제3항 중 “제22조의5제2항”을 “제22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의5제2항·제3항·제5항”을 “제22조의6제2항·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유아 사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 사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2. 유아 사교육 시장의 형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목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유아 사교육비 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매년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5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9조의3제3항・제4항 및 제19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25조의3,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 사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아 사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생 략)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하 이 조에서 ----------.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시·통합특별시----------. 제22조의5(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같은 조 제6호의4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2.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6호의4라목·마목,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 ② 원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제22조의5 (생 략)	제22조의6 (현행 제22조의5와 같음)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22조의7(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 법 제19조의5제1항제10호----------. ----------
제22조의7(회의 소집) ① (생 략)	제22조의8(회의 소집 및 의견 수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 정해야 -----.
<신 설>	④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22조의8(의견 수렴)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 ---------- ------ 존중해야 ---------- ---------- ---------- ---------- ---------- 보고해야 ----------.

②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5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12(시정명령) ----------법 제19조의5제1항----------.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③ ----------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 제22조의6제2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5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2조의9 및 제22조의10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심의”는 “자문”으로, “시·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④ ---------- 제22조의6제2항·제3항·제5항--------.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3(유아 사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 사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2. 유아 사교육 시장의 형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목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유아 사교육비 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매년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제33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 ---------- ---------- ---------- ---------- ---------- ------.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삭 제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④ 삭 제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③ ---------- 시·도지사---------- --. ⑤ ---------- 시·도지사---------- ----------.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 략)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9조의3제3항·제4항 및 제19조의4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